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2. 18.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1월 12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2015.1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가. 제안이유

- 우리구의 변경된 직제개편 사항 반영 및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변경된 직제개편 사항 반영(안 제5조제2항, 안 제5조제3항, 안 제6조제4항)
 - 도로관리담당주사 → 도로굴착팀장
 - 경리관 → 재무관
-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조례에 규정(안 제6조제6항, 안 제6조의3)
 -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

- 정기회 및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규정 등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직제 개편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라 회계공무원 관직명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 직제개편 사항에 따라 “도로관리담당주사”를 “도로굴착팀장”으로 직위명을 변경함.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록에는 회의 실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함.

또한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면서 시행규칙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운영사항 등 필요한 조항은 조례안으로 신설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영등포구 부패 방지를 위한 영등포구 부패영향 평가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보완하여

투명한 위원회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08 호
----------	---------

제출연월일 : 2015.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의 변경된 직제개편 사항 반영 및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된 직제개편 사항 반영(안 제5조제2항, 안 제5조제3항, 안 제6조제4항)

- 도로관리담당주사 → 도로굴착팀장
- 경리관 → 재무관

나.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조례에 규정(안 제6조제6항, 안 제6조의3)

-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
- 정기회 및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규정 등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심사실시(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있음)

-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함(의견반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원안 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9.03. ~ 2015.9.23.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를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로관리담당주사로**”를 “**도로굴착팀장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토목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을 “**도로굴착복구 및 기금운용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담당주사가**”를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팀장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의 심의를 위해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1.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5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중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

건 명 :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첨부서류 :

1. 현황설명서
2. 사업계획서
3. 소요예산산출서
4. 기타

도로과장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심의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건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

주 제	의 결 사 항	비 고

20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생략)</p> <p>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금고에 <u>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u> 예치·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생략)</p> <p>② 기금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u>도로관리담당주사로</u> 한다.</p> <p>③ 「지방재정법」 중 <u>경리관</u>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도로굴착팀장으로</u>----- -----.</p> <p>③ -----<u>재무관</u>----- ----- -----.</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u>를 둔다.</p> <p>1. ~ 5. (생략)</p> <p>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과장으로 하며,</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u>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생략)
- 2.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 3. 토목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⑤ (생략)

<신설>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신설>

<신설>

-----.

- 1. (현행과 같음)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
- 3. 도로굴착복구 및 기금운용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

④ -----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팀장이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의 심의를 위해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 1.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

